아동복지 시설의 새로운 방향모색

부청하*

I. 서론

6.25동란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차원에서 많은 아동복지시설(고아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40년이 지난 오늘에는 전국에 270여개나 되는 아동복지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또한 88올림픽까지 치른 나라인데 아직도 고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요즈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기아, 미아는 약 40%정도이며 60%이상이 이혼 및 가정파괴로 인하여 시설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전국 270개 시설중에 법정 정원을 100%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10%미만이며 90%이상이 정원에서 미달되는 70%정도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현실에 맞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시설의 새로운 운영연구

첫째로, 아동들의 입, 퇴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퇴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8월 30일에 대통령 제 13968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 상록보육원장

제 8 조 (시설보호조치)

1.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 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아동시설의 장에게 보건사회 부령이 정하는 요보호자 수용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했을 때에는 우선 보호조치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요보호자 수용의뢰서를 교부하거나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설아동입소시에는 개정령에 의하여 입소되는 경우, 시설장(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에 관한 사항이나 부모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 수 있기때문에 아동보호 양육에 큰도움이 될 것같다.

2) 시설아동 퇴소시에 종전과 같이 아동상담소에서 일방적으로 상담을 해서 퇴원조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부언한다면 그 동안 아동을 몇년동안 보호, 양육해온 시설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퇴소 명령을 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부모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부모들의 양육비를 조금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능력있는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 자기 자식들을 시설에 맡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또한 부모와 시설이 공동으로 아동을 책임진다는 공동의식을 심어 주는데 있다.

시설에서는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시설들이 개인 후원자를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부모들도 후원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자식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아동벅지시설을 그 지역 사회특성에 맞도록 사회복지 종합쎈타(사회복지관)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각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정원에 미달된 상태에서 고아들을 보호하는 실정이다.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사회복지 종합쎈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보건사회부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수용아동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재단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추세로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아동 입소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인재산을 묶어 드는 것보다 희망하는 법인체를 택하여 시범

적으로 사회복지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산교체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였으면 한다.

다섯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정부보조금개선이 필요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내용을 살펴보면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종사자인건비, 종사자급식비, 종사자의료보험료, 종사자국민연금, 학용품비,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육아간식비, 복지수당으로 세밀히 구분되어 있다.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지출항목별로 세분되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시설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김범수). 현실에 맞게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93년도 아동 1인당 피복비가 49,790원(의류, 이불, 양말, 내의, 신발)이다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III. 결론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는 환경적 제반요인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설비와 제도가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 못지않게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활용방안이다. 지금까지 수용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시설의 위치와 설비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지역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 운영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88년 아동복지 창간호, 시설아동복지 연구지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양진 교수님이 투고한 결론과 본인의 의견이 일치해서 지양진 교수님의 결론을 인용했습니다)